

2019년도 광주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9년도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광 주 광 역 시 장

I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구분	채용분야	임용계급	선발예정인원	성별	시험과목
합계			79명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 방	지방소방사	46명	남	() , 한국사, 영어 (선택)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 급	지방소방사	3명 2명	남 여	(필수)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필수과목 중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구급상황관리	지방소방사	1명	여	
	운 전	지방소방사	10명	남	
	구 조	지방소방사	10명	남	
	항공조종사	지방소방위	1명	남	실기시험으로 대체 ※ 항공조종사 분야는 별도 공고에 의함
	소방관련학과졸업 등	지방소방사	4명 2명	남 여	(필수)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II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기간 : 3. 4.(월) ~ 3. 8.(금) □취소기간 : 3. 11.(월) ~ 3. 15.(금) ※ 접수·취소시간 : 09:00 ~ 21:00	필기시험	'19. 3. 25.(월)	'19. 4. 6.(토)	'19. 4. 18.(목)
	체력시험	'19. 4. 18.(목)	'19. 5. 1.(수) ~ 5. 3.(금)	'19. 5. 10.(금)
	신체검사 서류전형 적성검사	'19. 5. 10.(금)	'19. 5. 20.(월) ~ 5. 22.(수)	'19. 5. 28.(화)
	면접시험	'19. 5. 28.(화)	'19. 6. 3.(월) ~ 6. 5.(수)	'19. 6. 20.(목)

※ 상기일정은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공개경쟁 5과목, 경력경쟁 3과목)

- 배점 및 문항형식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1문항 당 1분 기준)
- 시험시간 : (공개경쟁) 100분<10:00 ~ 11:40>, (경력경쟁) 60분<10:00 ~ 11:00>
- 시험과목 : [붙임 1]

공개경쟁채용(5과목)	경력경쟁채용(3과목)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일반분야*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소방분야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일반분야 : 구급, 구급상황관리, 운전, 구조

○ 선택과목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 [붙임3]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 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붙임 5]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필기시험 합격인원
선발예정인원 2배수 이내(구급분야는 3배수 이내)

○ 시험문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출제

- : 필기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지 및 가답안 공개(공채, 경제)
- 공개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사이트(<http://119gosi.kr>) 확인

○ 필기시험 출제문제 이의제기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9. 4. 6.(토) 11:40 ~ 4. 7.(일) 24:00
- 신청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사이트(<http://119gosi.kr>)
- 신청절차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 글등록(이의제기서* 첨부)
- * 이의제기자는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문제 이의제기서 서식[붙임 10] 작성 첨부
- 주요내용 : 필기시험 출제문제 오류, 복수정답, 가답안 이의제기 등 질의

↳ 출제문제 이의제기는 인터넷 신청으로만 접수하며, 전화로는 이의제기 신청 불가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불합격자에 한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시정소식-시험/인사정보」란에 공고함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및 도핑테스트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측 정 방 법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별표 4) 참조 / [붙임 9]

○ 합격자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60점의 50% 이상(30점 이상)득점 시 합격

○ 도핑테스트

- 1)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
- 2)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안내문”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 예정
- 3)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7, 8] 참조,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
- 4)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 제출 방법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문의 서류전형 세부공고내용 참조
- 합격자 결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근무경력 등 적합여부 심사)
- 제출 서류

채용분야	개별 사항	공통사항
공개경쟁시험	소방	공통사항
경력경쟁시험	운전 구급	① 경력증명서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③ 소득증명원 ※ 국세청홈페이지 활용 ④ 공통사항 포함 ① 신원진술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 ④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⑤ 운전면허증 사본 ⑥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사항 및 병적사항 포함 ⑦ 자격증 사본 ⑧ 최종학력증명서 ⑨ 운전 경력증명서(경찰서&정부24)
	소방 관련 학과	① 졸업증명서(졸업자) ※ 4년제 대학교 미졸업자 : 재학(휴학, 자퇴 등) 증명서, 성적증명서 ② 공통사항 포함
	구조	① 군경력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병무청) ※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주특기교육 입교 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② 특수전임무수행 확인서(해당자)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④ 소득증명원 ※ 국세청홈페이지 활용 ⑤ 공통사항 포함 【기타】 해당자만 ○ 군복무 중인 자 - 군복무 확인서(전역예정일표기)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기준일

- 공통자격(1종 보통 또는 대형운전면허) 및 경력채용분야별(구급·통신) 면허·자격증의 보유 기준일 : **최초필기시험일**로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경쟁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www.ei.go.kr 발급),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주(週)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산정, 비상근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週)당 근무시간 명시), 직책, 담당업무, 상벌사항(**징계기록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제출 시 반드시 경력확인부서, 발급확인자 날인, 직통전화번호, FAX번호 포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제4차 시험 : 신체검사

- 신체검사 방법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적성 검사 시 제출(검사 수수료 응시자 개별 납부)
- ※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름[붙임6]
- 신체조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분 별	합 격 기 준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 조건표 외의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인·적성 검사 일시·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평 정 요 소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 면 접 방 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 1 2단계 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50% 이상)인 자
-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채용예정인원에 미달 또는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 「구급분야」 및 「소방관련학과 졸업 등」 분야는 각 성별 선발 예정인원보다 최종 합격자가 미달되었을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 다른 성별에서 추가 선발

IV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공통)** ※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
」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및 제51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까지 적용)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과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19.4.17. 시행)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의 법인 등 세부내용은 법률 참조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결격사유 해당 법령 제·개정 시 변경 법령에 의함

□ 응시 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채용분야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소방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8. 1. 1. ~ 2001. 12. 31.								
경력경쟁채용	운전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8. 1. 1. ~ 1999. 12. 31.								
	구급										
	구조										
	구급상황관리										
	소방관련학과										
<p>※ 응시상한연령의 연장</p> <p>「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복무기간</th> <th>1년 미만</th> <th>1년 이상 ~ 2년 미만</th> <th>2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연장기간</td> <td>1세</td> <td>2세</td> <td>3세</td> </tr> </tbody> </table>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 채용시험 : 해당됨(아래참조)
- 경력경쟁 채용시험 : 없음

<p>2019년도 광주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개인별 주민등록초본 기준)</p> <p>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p> <p>2.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 를 기준으로 함 <p>※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p>
--

□ 자격 및 경력 제한

○ **공통자격**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 보유 기준일은 최초 필기시험일 까지 취득 및 발급받아야 하며 면접시험 최종시험일 까지 유효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 발표일 까지 응시요건으로서의 운전면허 자격보유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할 경우 응시자격은 박탈되며, 합격자 결정을 취소 함

○ 경력경쟁채용(분야별)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운전 (지방소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1종 특수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 실무 경력이 있는 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운전경력 ※ 긴급자동차량 운전분야 근무경력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제1항에 명시 된 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중 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외 ② 자체소방대(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공항·항만 소방대에서 소방차, 구급차 운전경력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구급 (지방소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의사, 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1) 또는 간호업무 경력2)이 있는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 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2)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 구급 실무경력 인정범위 ① 「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 근무 한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구조 (지방소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padding: 5px;">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td> <td style="padding: 5px;">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td> </tr> <tr> <td style="padding: 5px;">② 특수임무대(국방부)</td> <td style="padding: 5px;">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회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수색대대</td> </tr> <tr> <td style="padding: 5px;">③ 기타 특수전부대</td> <td style="padding: 5px;">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등 증명원 제출</td> </tr> </table>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국방부)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회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수색대대	③ 기타 특수전부대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등 증명원 제출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국방부)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회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수색대대						
③ 기타 특수전부대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등 증명원 제출						
소방관련학과 졸업 등 (지방소방사)	<p>아래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p>※ 유사 학과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규칙 제4조(소방관련학과)에 따라 별표2의 소방관련 과목이 전공과목의 1/2이상을 채택한 학과를 졸업한 자</p>						
구급 상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5급 이상으로 소방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항공 조종사	<p>「항공안전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전익항공기 조종 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모의비행 시간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②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항공기 비행경력이 있는 자 ③ 전자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④ 「항공안전법」 제44조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⑤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종 소지자 						

-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분야 (항공조종사분야는 별도 공고문 참고)
 -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이용
 - ※ 접수 및 취소 관련 문의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문의 : 1522-0660
 - 접수기간 : 2019. 3. 4.(월) ~ 3. 8.(금) 5일간
 - ※ 접수취소기간 : 2019. 3. 11.(월) ~ 3. 15.(금)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사 5,000원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9조(응시수수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관련기관에 수급자(보호대상자)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휴대폰 셀프카메라 및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 ※ 사진 식별불능 및 등록오류로 인하여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가산점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본인이 직접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표기해야 합니다.

○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당해 필기시험 전일 기준)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5%까지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등 소지자	자격증 (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 ~ 5%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 ~ 3%	

○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함(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의사상자 등 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따라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해야 함
(보건복지부 ☎ 044-202-3258)

- 자격(면허)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면허증에 한함**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 중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 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 ~ 5%)을 가산함**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세부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내역 : [붙임4]**)

가점비율 분야	5%	3%	1%
자 격 증 (면허증)	1.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 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 4.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등 대상자가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는 가산점 합산적용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등 대상자에 모두 해당될 경우 수험생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경우에만 부여
 -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함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시정소식-시험/인사정보」란에 공고함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원서접수 시 가산점 미 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 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정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5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062-613-80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필기시험 과목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별표 3)

□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비고

-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소방관계법규는 다음 각 목의 법령으로 한다.
 -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별표 5)

1. 일반분야

구분 \ 과목별	필수과목	선택과목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사·지방소방사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2. 소방분야

구분 \ 과목별	필수과목	선택과목
소방사·지방소방사 (소방분야)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비고

- 위 표 제1호에서 일반분야는 위 표 제2호의 소방분야 및 항공분야 외의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 위 표 제1호에서 소방사·지방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위 표 제2호에서 소방관계법규는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 위 표 제2호에서 항공분야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항공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 하고, 소방분야는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분야의 졸업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 한다.

붙임 2 필기시험 과목 통합편철 순서

소방공무원 **공개** 경쟁채용시험 편철순서

□ 편철순서

편철 순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 필수과목(3과목)

제1과목	제2과목	제3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과목(2과목)

유형	제1선택	제2선택
1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2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3	소방학개론	사회
4	소방학개론	과학
5	소방학개론	수학
6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7	행정법총론	사회
8	행정법총론	과학
9	행정법총론	수학
10	소방관계법규	사회
11	소방관계법규	과학
12	소방관계법규	수학
13	사회	과학
14	사회	수학
15	과학	수학

소방공무원 **경력** 경쟁채용시험 편철순서

□ 편철순서

편철순서	①	②	③	④	⑤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영어

□ 시험과목

채용예정계급	채용분야	제1과목	제2과목	제3과목
(지방)소방사	구조, 구급, 의무소방원전역(예정) 등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소방전공학과 졸업(예정)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장	소방교, 소방장 경채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붙임 3 필기시험 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야		내 용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야		내 용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족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소방공무원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세부 내역

분야	5%	3%	1%
① (면허증)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 ,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화공,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위험물,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에너지관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화공, 화학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투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상, 기상감정,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화학류제조,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3D프린터개발,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 :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운수운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철도차량정비,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화학분석, 위험물, 전기, 철도전기신호,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카드, 3D프린터 운용,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가스,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1 ~4급 향해사, 기관사·운항사, 잠수기능장	5급 또는 6급 향해사기관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대형견인차(舊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의사, 변호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참조
- ※ 자격(면허)증(①), 사무관리(②)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함.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 ※ 자격(면허)증(①), 사무관리(②)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2제1항 관련)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text{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붙임 6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합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썸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구강· 인후기관 계통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 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비뇨기 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 관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행정자치부고시 제2016-1호)한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 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1)대사물질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drostanolone ▶ methenolone
 -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 stanozolol
 -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클렌부테롤(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 pentazocine ▶ pethidine

□ 금지방법

○ 「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대사물질 :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소 방 공 무 원 체 력 시 험 측 정 방 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p>악 력 (kg)</p>	<p>○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p>
<p>배 근 력 (kg)</p>	<p>○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p>
<p>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p>	<p>○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뺀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뺐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p>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붙임 11 소방관련학과의 소방관련 과목

분 야	과 목
사회과학분야 (12)	소방행정법, 소방정책론, 소방조직론, 소방인사론, 소방재정론, 비교소방론, 소방심리학, 소방홍보론, 재난관리론, 소방법규해설, 소방행정사, 소방학개론
실무분야 (10)	화재진압론, 구조론, 응급처치론, 소방장비론, 소방지휘론, 소방사범처리론, 소방검사론, 위험물시설론, 화재조사론, 소방행정실무
자연과학분야 (14)	연소폭발론, 화재현상론, 특수화재론, 소화약제학, 소방기계시스템설계개론,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건축소방학, 소방경보시스템공학, 소방전기설비공학, 소방정보통신론, 위험물질론, 소화설비론, 제연설비론, 소방학개론

비 고 : 1. 1학점 이상으로 편성된 과목

2. 2이상의 과목이 1개의 과목으로 통합편성된 경우 1과목으로 간주

3. 과목 명칭 및 내용이 위 과목과 유사한 경우 소방관련 과목으로 인정하되 그 판단은 중앙소방학교장이 한다.

※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성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증빙자료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